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1.

발 의 자 : 이주영 · 이준석 · 천하람
황명선 · 박대출 · 문진석
김예지 · 최수진 · 김용만
김 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·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·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·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장애인의 형사·

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, 제42조제1항 신설 등).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) ①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한 발달장애인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. 사전 동意的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내용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

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) ①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한 발달장애인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. 사전 동意的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내용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</u>

제42조(벌칙) <신 설> (생 략)	<u>령으로 정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제42조(벌칙) ① <u>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 <u>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u>
--	---